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단354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나21942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단3543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충청북도

소송대리인 B, C, D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65,800원을 지급하고, 2020. 3. 6.부터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별지 기재 각

토지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94,4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충주시 E 임야 1정 52무’(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2. 11. 망 F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E 토지에 관하여 1978. 11. 1. 면적 단위를 평방미터로 환산(15,074㎡)하는 등기가 이루어지고, 같은 날 별지 기재 각 토지가 E 토지에서 분할¹⁾ 되어 E 토지의 면적은 14,526㎡로 축소되었으며, 별지 기재 각 토지의 지목은 같은 날 도로로 변경되었다.²⁾ 다. 1980. 3. 1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G로 별지 기재 각 토지를 지나는 국도 H(선)을 포함한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가 이루어졌다.

라. E 토지에 관하여 1981. 6. 3. 망 F으로부터 J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2003. 2. 14. 충청북도고시 K로 별지 기재 각 토지를 지나는 지방도 L(M 노선)을 포함한 도로의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가 이루어져 별지 기재 각 토지는 국도, 지방도로 중용되게 되었다.

바. 2012. 6.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N로 국도 H 중 별지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부분(충주시 O부터 충주시 P까지)의 도로사용폐지 공고가 이루어져,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지방도의 도로구역결정 고시만이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사. 망 F이 사망하여,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8. 2. 접수 제29376호로 ‘2016. 11.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7,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바,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부당이득의 범위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3. 5.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토지사용료(차임) 상당액이고, 이는 지목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 1) 피고는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2003. 2. 14. 도로구역결정에 관한 고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점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별지 기재 각 토지 지상에 개설된 도로는 유료도로가 아니므로 피고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지도 않다. 지역민 기타 통행자들이 위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일반적추상적 이익이 증대되었다고 가정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 2)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국도 H의 사용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1980. 2. 22.경부터는 피고가 별지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그로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별지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 나아가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이 당시 소유자인 망 F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치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3) 별지 기재 각 토지는 1978년 이전부터 이미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별지 기재 각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도로로써의 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별지 기재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도 도로의 존재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어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 4) 설령 별지 기재 각 토지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액은 원래의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 소유자인 망 F으로부터 별지 기재 각 토지를 상속하여 취득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별지 기재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별지 기재 각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점유취득시효 항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6620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망 F으로부터 별지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①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최초로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때는 1980. 3. 11.인데, 망 F은 별지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하고 있던 E의 소유자로서 위 관보 공고를 앞둔 1978. 11. 1.경 E 토지에서 별지 기재 각 토지를 분할하여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이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 전에 도로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E 토지 중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망 F으로부터 해당 부분을 매수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에 해당한다.
 - ② 별지 기재 각 토지는 분할 후 잔존하는 E 토지로 이어지는 진입로 위치에 해당한다. 별지 제1항 기재 토지는 도로와 그에 인접한 법면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고, 별지 제2항 기재 토지는 길쭉한 띠의 형상을 하고 있어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③ 망 F은 분할 후 남은 E 토지를 J에게 매도하여 위 관보 공고 후 약 1년 3개월이 지난 1981. 6. 3.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는 등 그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으나, 별지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는 그 뒤로 망인이 사망한 2016년경까지 약 38년간 아무런 처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4) 원고도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8.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뒤로 약 2년 7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④ 별지 기재 각 토지는 도로라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으로 취급되어, 별지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아 왔다.
 - ⑤ 별지 기재 각 토지 지상에는 1938년경부터 이미 도로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를 한 1980. 3. 11.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별지 기재 각 토지를 평온, 공연히 점유하여(원고도 도로법에 의하여 별지 기재 각 토지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할 뿐 대한민국이 평온, 공연히 별지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해 온 점에 관하여는 별달리 다투고 있지 않다) 2000. 3. 10.경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피고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인 원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참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5)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충현

별지

부동산 목록

1. 충주시 Q 도로 467㎡
2. 충주시 R 도로 81㎡

1) 폐쇄등기부(을 제12호증)에는 별지 기재 각 토지가 1981. 6. 3.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임야대장(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위 1981. 6. 3.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E 토지를 매도한 날임에 비추어 폐쇄등기부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2) 별지 제2항 기재 토지의 등기부(갑 제1호증의 2)상으로는 별지 제2항 기재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유지되고 있다가 2013. 7. 16.에야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을 제6호증의 2)에는 1978. 11. 1.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으로는 본문과 같이 지목 변경된 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을 제7호증의 2)에도 등기부상 지목 변경 전인 2008년경부터 이미 별지 제2항 기재 토지가 ‘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등기부의 기재는 오류로 보인다.

3) 따라서 도로법상 도로구역결정에 관한 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법률상 원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별지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설치된 도로가 유료도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인정된다. 이를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별지 제2항 기재 토지의 지목이 2013. 7. 16. 도로로 변경되었다는 등기부상 기재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오기로 보인다.

5)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